뇌심혈관계질환으로 추정되는 급사

성별 나이 직업관련성 남 53세 직종 영업직 미판단

1 개 요

김 ○ ○ (53세, 남)은 1995년 S종합설비에 입사한 후 마산소재 본사를 떠나 서울사무 소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 4월 새벽에 갑자기 쓰러진 후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
김○○는 서울지역에 본사를 둔 1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비공사 수주를 목 적으로 공사발주현황파악과 공사진행사항파악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를 순회하면 서 공사정보입수 및 관리를 하고 송사견적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. 사고 경위는 1999년 4월 5일 5:30분경 골프를 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6:00경 토하면 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다. 골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불분 명하며, 시체검안서에서 직접사인, 중간선행사인, 선행사인은 '미상'이었다. 김○○ 은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과음하는 날이 많았으며, 공휴일 골프접대관계가 많았다고 한다.

3 의학적 소견

1999년 3월 30일 S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으나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1999년 4월 5일 사망하였는데 S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검진결과 심전도 검사상 좌심실 비대, T파 이상으로 심근경색이 우려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

4 결 론

김 이 이의 사망은

- ①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'뇌심혈관계질환'으로 사망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,
- ② 음주의 업무관련성과 자의성의 파악이 모호하고,
- ③ 정확한 업무의 파악이 불가능하고, 접대의 목적 및 횟수, 음주의 정도가 파악되지 못하여 과로를 밝힐 수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,

사망 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.